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약물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56호)
-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6호)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58호)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9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개요	1
--------------	---

【윤영석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임호선의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김주영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양부남의원안】

1. 제안 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Ⅱ. 검토의견	6
1. 약물의 정의 규정 신설(양부남의원안 제2조)	6
2. 약물 복용 여부 측정 및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임호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제45조)	14
3.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윤영석의원안 제148조의2)	22
4. 약물 운전 및 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사유(임호선의원안 제82조, 제93조)	25

I. 개요

【윤영석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윤영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2. 18.

다. 회 부 일 : 2025.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임호선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6.

다. 회 부 일 : 2025. 3.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김주영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김주영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3. 18.

다. 회 부 일 : 2025. 3.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양부남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II. 검토의견

1. 약물의 정의 규정 신설(양부남의원안 제2조)

개정안은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 약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 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정의된 약물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임.

현행법(2025년 4월 1일 개정 ¹⁾ 전 법률, 법률 제20375호)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법률 (법률 제20864호)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34. (현행과 같음) 35.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u>및 대마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u> <u>가. 톨루엔, 초산 에틸 또는 메틸알코올</u> <u>나. 가목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u> <u>다. 부탄가스</u> <u>라.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 ----- -----

현행 「도로교통법」(2025년 4월 1일 개정 전 법률, 법률 제20375호) 제45조는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 약물을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³⁾는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⁴⁾에 따른 환각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환각물질을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 제외)로 정하고 있음⁵⁾.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⁶⁾에 따라 제45조를 위반한 약물 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제45조에 규정된 약물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3조제1항⁷⁾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처벌될 행위인지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⁸⁾

약물은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⁹⁾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을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될 내용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약물을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는데

5)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4월 2일에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2항에서도 현행법의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일한 의미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로 개정하였을 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 내용은 그대로 규정하고 있음.

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8) 헌법재판소 1991년 7월 8일 선고 91헌가4 결정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恣意的)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임.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2조제1항제35호의 각 목 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경우에도 제35호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개정안 제2조제1항제35호에서는 약물을 각 목 외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과 각 목에서 정하는 부분(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각 목에 규정함으로써 약물의 의미를 신속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2조제35호 각 목은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과 연동하여 변화될 것이 예측되는 조문으로 향후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자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¹⁰⁾)을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약물에 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6년 약물의 구체적인 개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제1호부터 제3호)로 규정된 이후 약 11년 동안 동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하게 유지된 이후,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¹¹⁾의 개정으로 환각물질에 아산화질소(제4호)가 추가되었음.

약물의 개념에 대한 법령의 입법 연혁

- 「도로교통법」에 약물 개념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근거 신설(1985년 시행)
 - 1984년 8월 4일 개정되어 1985년 2월 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법률 제3744호)부터 약물을 현행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¹²⁾
 - * 1984년 8월 4일 개정전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¹³⁾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약물의 개념을 규정(2006년 시행)
 - 「도로교통법」(법률 제3744호)이 위임한 내용은 2006년 6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¹⁴⁾부터 약물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¹⁵⁾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환각물질의 개념이 추가됨(2017년 시행)
 - 2007년 9월 28일 개정 전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0호) 제26조¹⁶⁾는 환각물질을 제1호(톨루엔 등)부터 제3호(부탄가스)까지 규정하였으나, 2017년 8월 1일 개정을 통해 제4호의 아산화질소가 추가됨.¹⁷⁾

1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2013년 6월 4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2) 「도로교통법」(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제42조 (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도로교통법」(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40조 (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약물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화학물질을 법률에 열거할 경우 향후 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개정 수요 발생 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약물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전부개정)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 1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2013년 6월 4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1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26조(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 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23호, 2017. 8 .1. 일부개정)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약물 복용 측정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임호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제45조, 제148조의2)

개정안들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약물 복용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들은 약물 측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약물 측정의 방법으로는 임호선의원안은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으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 임호선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김주영의원안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 외에 김주영의원안은 약물 운전이 금지되는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있음.

현행법(2025년 4월 1일 개정 ¹⁸⁾ 전 법률, 법률 제20375호)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법률 (법률 제20864호)	임호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 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 44조에 따른 술 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 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 그 밖에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 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 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하여서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 장치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 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 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마 약류 및 그 밖 에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제 45 조 (약 물 의 영향을 받는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 차 등 (개 인 형 이동장치는 제 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 전자는 제44조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 에 약물(「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 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 과로, 질 병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	제 45 조 (과 로 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 차등 또는 노 면전차의 운전 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 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 상적으로 운전 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 서 자동차등 또

는 아니 된다.

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

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소변·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	--	--	---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u>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u>	<u>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 한다.</u>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생략)	① ~ ⑤ (생 략)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서 <u>제44조제2 항</u> 에 따른 경 찰공무원의 측 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 는 노면전차를			1. ----- ----- ----- ----- ----- <u>제44조</u> <u>제2항</u> 또는 <u>제</u> <u>45조제2항</u> --- ----- ----- ----- -----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③ (생 략) ④ <u>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u>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u> 2. <u>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u>	-----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	--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5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 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 는 사람	
--	--	--	--

약물 측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¹⁹⁾하여 2026년 4월 2일에 시행 예정임.

2026년 4월에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0864호)은 약물 측정의 요건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약물 측정의 방법을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18) 2025년 4월 1일 공포된 법률은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1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 2월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마련되어 의결됨.

약물 운전의 측정 및 처벌 규정이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그 효과를 검토한 이후에 약물 측정의 요건,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수준, 약물 운전의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할지 등을 개정할지 여부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⁰⁾

20) 참고로, 2025년 약물 운전에 대한 측정 근거 마련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할 당시 4개의 법률안이 논의되었음.

약물의 측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3개의 법률안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그리고 약물의 측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타액 간이시약검사를 명시하고,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측정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됨.

3.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운영석의원안 제148조의2)

개정안은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2025년 4월 1일 개정 ²¹⁾ 전 법률, 법률 제20375호)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법률 (법률 제20864호)	운영석의원안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 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 ④ (생 략)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5년----- -----5천만 원----- -----.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1) 2025년 4월 1일 공포된 법률은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4월 2일에 시행 예정임.

개정안과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비교해 보면, 징역형의 상한은 5년으로 동일하지만 벌금형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시행 예정 법률의 벌금형 상한보다 3천만원이 높음.

약물 운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할 때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약물 운전은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약물 사용과 약물 운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합범은 「형법」 제38조제2호²²⁾에 따라 무거운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조의 법정형 상한을 합산한 형량을 초과할 수 없음.

약물 운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면, 마약 또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이후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액 상한이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고, 대마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한 이후 운전한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7,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가함.

22)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약물운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 시 법정형 비교]

약물	① 약물 운전 (도로교통법)		② 약물 사용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① ② 함께 적용 (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	
	시행 예정 법률	개정안		시행 예정 법률	개정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2천만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벌금 ²³⁾	1억 2천만원 이하 벌금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5천만원 이하 벌금 ²⁴⁾	7천만원 이하 벌금	7,500만원 이하 벌금
환각물질			5천만원 이하 벌금 ²⁵⁾	7천만원 이하 벌금	7,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4월에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그 효과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법정형의 상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⁶⁾

23)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4)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26) 참고로, 2025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당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4.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사유(임호선의원안 제82조, 제93조)

개정안은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2025년 4월 1일 개정 ²⁷⁾ 전 법률, 법률 제20375호)	2026년 4월 2일 시행 예정 법률 (법률 제20864호)	임호선의원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	② ----- ----- ----- ----- ----- ----- -----	② ----- ----- ----- ----- ----- ----- -----

3가지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078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1963),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7879)]이 논의되었고, 3가지 법률안은 징역형의 상한을 모두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형의 상한은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제3항제1호)의 가장 높은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상한이 2천만원인 점 등을 감안하여 2천만원 이하의 대안이 마련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 ② (생략)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3. (생략)

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 ----- -----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경 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을 함께 위반한 경 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3. ----- ----- ----- ----- ----- ----- -----	3. ----- ----- ----- ----- ----- ----- -----
가. 제44조제1항· 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 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	가. ----- -----제45조제 1항·제2항----- ----- ----- ----- ----- ----- -----	가. ----- -----제45조제 1항·제2항----- ----- ----- ----- ----- ----- -----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나. <u>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	나. <u>제44조제1항 · 제2항, 제45조 제1항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u> ----- ----- -----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다. · 라. (생략)		
4. ~ 10. (생략)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
(조건부 운전면허는	-----	-----
포함하고, 연습운전	-----	-----
면허는 제외한다. 이	-----	-----
하 이 조에서 같다)	-----	-----
를 받은 사람이 다음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면 행정안전부	-----	-----
령으로 정하는 기준	-----	-----
에 따라 운전면허(운	-----	-----
전자가 받은 모든 범	-----	-----
위의 운전면허를 포	-----	-----
함한다. 이하 이 조	-----	-----
에서 같다)를 취소하	-----	-----
거나 1년 이내의 범	-----	-----
위에서 운전면허의	-----	-----
효력을 정지시킬 수	-----	-----
있다. 다만, 제2호,	-----	-----
제3호, 제3호의2, 제7	-----제4호, 제4	-----
호, 제8호, 제8호의2,	<u>호의2, 제7호</u> -----	-----
제9호(정기 적성검사	-----	-----
기간이 지난 경우는	-----	-----
제외한다), 제14호,	-----	-----
제16호, 제17호, 제20	-----	-----
호부터 제23호까지의	-----	-----
규정에 해당하는 경	-----	-----
우에는 운전면허를	-----	-----
취소하여야 하고(제8	-----	-----

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
취소하여야 하는	-----	-----
운전면허의 범위는	-----	-----
운전자가 거짓이나	-----	-----
그 밖의 부정한 수단	-----	-----
으로 받은 그 운전면	-----	-----
허로 한정한다), 제1	-----	-----
8호의 규정에 해당하	-----	-----
는 경우에는 정당한	-----	-----
사유가 없으면 관계	-----	-----
행정기관의 장의 요	-----	-----
청에 따라 운전면허	-----	-----
를 취소하거나 1년	-----	-----
이내의 범위에서 정	-----	-----
지하여야 한다.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45조를 위반하	4. 제45조제1항을---	4. 제45조제1항을---
여 약물의 영향으	-----	-----
로 인하여 정상적	-----	-----
으로 운전하지 못	-----	-----
할 우려가 있는 상	-----	-----
태에서 자동차등을	-----	-----
운전한 경우	----- <u>경우(다만,</u>	-----
	<u>개인형 이동장치를</u>	
	<u>운전하는 경우는</u>	
	<u>제외한다)</u>	
	<u>4의2. 제45조제2항</u>	

	<u>후단을 위반하여</u> <u>약물의 영향으로</u> <u>인하여 정상적으로</u> <u>운전하지 못할 우</u> <u>려가 있는 상태에</u> <u>있다고 인정할 만</u> <u>한 상당한 이유가</u> <u>있음에도 불구하고</u> <u>경찰공무원의 측정</u> <u>에 응하지 아니한</u> <u>경우</u>	
5. ~ 23. (생략)	5. ~ 23. (현행과 같음)	5.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26년 4월 2일에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345

27) 2025년 4월 1일 공포된 법률은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